

평창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9.
제출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이장의 임무수행시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개정하여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 (안 제3조)
 - 이장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「직무상 명령에 복종」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「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」로 개정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평창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복무) 제2항 중 "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" 를 "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복무)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 함에 있어 <u>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</u> <u>야 하며</u>,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 수하여야 한다. ③~④ 현행과 같음</p>	<p>제3조(복무) ① 현행과 같음 ② ----- ----- <u>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</u> <u>야 하며</u> ----- -----. ③~④ 현행과 같음</p>